(재)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5 - 47 호

# (재)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안전관리센터『인증사무원』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

(재)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는 금산군의 인삼·약초 산업의 품질관리와 안전 관리체계를 발전시키고 관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05. 20.

(재)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



### 1 채용분야 및 인원

근로형태	채용인원	채용분야	담당업무
기간제	1명	인증사무원	○ GAP인증기관 행정업무 ○ 민원 상담, 예산관리 ○ GAP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○ 유관 사업 관리 및 수행

※ 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(붙임1) 참조

#### < 근무조건 >

- **신 분**: 기간제 근로자 (인증사무원)
- **근무기간**: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(최대 2년 이내)
- **근무시간**: 주 5일 근무, 1일 8시간(09~18시)
- 보수 및 복지
  - 진흥원 보수 규정에 의함
  - 4대보험 가입, 기숙사, 복지포인트 등

#### ② 응시자격

- (1) GAP인증 사무원: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3] 관련
  -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
    -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
    - 전문대학에서 전문 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농산물의 품질관리 업무 경력자
    - 농림분야의 기술사·기사 또는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증 소지자
    - 농업관련 기업체·연구소·기관·단체 등에서 품질관리업무 3년 이상 경력자
    - 우수관리 인증기관에서 인증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
  - ② 차량운전이 가능한 자(운전면허증 소지자)
  - 관내 외 출장 등 GAP인증 및 안전성 조사 활동 등 현장업무 지원 가능자
  - ③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자

### ③ 시험방법

- 가. 1차 시험: 서류전형(응시자격 등의 적격여부)
- 나. 2차 시험: 면접시험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  -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근무자세 등의 적격성 종합평가
  -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 대상자. 해당 분야 경력자 순으로 우선 선발

### 4 원서접수 및 일정

- 공고 및 접수기간
  - 가. 공고기간: 2025. 5. 20. ~ 5. 30.(공고시간: 09:00~18:00)
  - 나. 접수기간: 2025. 5. 26. ~ 5. 30.(접수시간: 09:00~18:00)
    - 접수장소: (재)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안전관리센터(1층)
    - 접수 방법: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,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로 제출합니다(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)
    - 접수문의: E-mail(gap1690@naver.com). ☎ 041-750-1692
  - 다. 전형방법: 서류 전형(적/부판정), 면접 전형(고득점자 순)
    - \*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
    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합격자에 한 해 개별 통보(홈페이지 공고)
    - 면접실시: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
    - 최종 합격자 발표: 합격자에 한 해 개별 통보(홈페이지 공고)
    - 채 용: 2025년 6월
  - 라. 예비합격자: 비합격자로 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운영
    - 채용자 중 3개월 이내 퇴사한 결원에 대하여 충원실시

### 5 제출서류

- 가. 응시자 제출서류
  - 입사지원서 1부 (붙임 2)
  - 자기소개서 1부 (붙임 3)
 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(붙임 4)
  -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, 운전면허증 사본 각1부
  - 경력 증명서 1부 (경력자에 한함)
- 나.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
  - 주민등록 초본(병역사항 포함). 기본 증명서 각 1부
  -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 1부

#### 6 기타 유의사항

- 〈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 임용(채용)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 될 수 없습니다. 〉
- 진흥원 직원 인사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. (단,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)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**2**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6의2. 법률에서 진흥원 직원의 결격사유로 정하는 자
- 7. 전근무지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 처분을 받았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자
- 8. 기타 진흥원 직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자
- 9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- 10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11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· 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.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성범죄
- 「병역법」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
- 「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배치 전 건강검진진단 결과 부적합한 자

- 채용 입사지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시실과 상이하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하며, 응시자의 연락 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※ 제출서류 위・변조 발견 시 당연 취소되며 향후 응시자격 박탈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채용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력서, 졸업증명서 등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환 요청 할 수 있음.
  - ※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청구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파기할 예정
- O 반환 요청(방문 접수자에 한함)은 이메일로 요청 시 관련 서류 안내 및 확인 후 등기 반환(요금 신청자 부담). 단 홈페이지 및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이 아님
- 본 직원 채용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(http://gghda.kr)에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.
- O 최종 합격자 결정 후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사 결과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O 3개월 이내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계약해지 할 수 있음
- 이 공고와 관련된 질의응답 중 전화,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판 답변 등은 효력이 없고, 서면 답변한 공문만 효력이 있으며, 시스템 입력 내용보다 공고문이 우선하며, 공고문의 내용은 우리 진흥원에서 해석한 대로 따라야 합니다.
- O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될 시.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  -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괴실로 사용자에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
  - 예산 부족 등으로 고용해지가 불가피할 때
  -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  - 상습적인 결근, 지각,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미준수 외 근무지 이탈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할 때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(재)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안전관리센터 ☎ 041-750-1692

# 7 서류심사 기준

응시 번호	직무내용	지원자격	적격 여부	비고
	■ <b>GAP</b> 인증 사무원	*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3] 관련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-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자 -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 경력자 - 농림분야의 기술사・기사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- 농업 관련 기업체・연구소・기관・단체 등에서 품질관리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- 우수관리인증기관에서 인증관련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② 차량운전이 가능한 자(운전면허증 소지자)		

# 8 면접심사 기준

면접 평가표								
1. 인적사항								
소 속		) ()) U	,			접수번호		
면접일자		지원직무	-			성 명		
점수				평가점수				
요소	평 가 항 목	A	В	С	D	F		평가
업무요소 (35)	직무의 적합성(35)	35	30	25	20	15	;	
능력요소 (50)	직무 지식(20)	20	16	12	8	4		
	이해, 판단력(10)	10	8	6	4	2		
	정보수집/분석력(10)	10	8	6	4	2		
	교섭력/ 커뮤니케이션능력(10)	10	8	6	4	2		
태도요소 (15)	적극성/도전성(15)	15	12	9	6	3		
합 계	100점							
구 분	평 가 자				평 가 결 과			
						7	평가격	석수
의 견								
본인은 평가자로서 위신과 명예를 걸고 공평하고 양심적으로 평가하였음을 증명함.								
	Σ	형가자 즉	식책		성명			(1)

#### (붙임 1. 인증사무원)

## 채용 직무기술서

채용분야		대분류	중분류	소분류	세분류		
NCS 분류 체계	인증사무원	99.미개발	99.미개발 99.미개발		99.농산물인증심사		
Z	직업기초능력	■ 직업윤리, 의사소통능력, 수리능력, 자원관리능력, 문제해결능력, 정 보능력, 대인관계능력					
주요사	· <b>업</b> - 농산물 안전	■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(GAP) 운영 - 농산물 안전관리 - 유관사업 수행					
전형방	<b>법</b> • 서류전형 <del>·</del>	■ 서류전형 → 면접전형 → 합격자 발표 → 결격사유 조회 → 채용					

	직 무 설 명						
	핵심 업무	■ GAP인증기관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. GAP정보시스템 관리 ■ 농업인 대상으로한 민원상담 및 GAP인증 접수 및 안내 ■ 유관 사업 관리 및 수행					
	직무 내용	■ 농업인 대상 안전성 및 GAP관련 민원업무 처리 ■ GAP인증기관 운영에 따른 인증신청 접수처리/수수료 수납 등 처리 ■ GAP인증심사관련 행정업무 지원 ■ 소속 기관 부여 업무					
인 증	필요 지식	■ 관련 법령 및 업무절차에 대한 이해, 정보시스템 운영메뉴얼 숙지 ■ GAP인증에 대한 행정 및 예산처리					
사무원	필요 기술	■ 농업인 상담 및 지도 등의 민원처리능력, 전산 사무 처리					
	직무 태도	□ ■ 갤판절이 파난 및 독리절이 무절 태노 그갤 사양절이 사고					
	필요 자격	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3]에 따른 GAP인증 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■ 차량운전이 가능한 자(운전면허증 소지자)					